

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

(의안번호 제865호)

심사 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7. 3 고 성 군 수
- 나. 회부일자 : 2003. 7. 14
- 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03. 7.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세입세출결산 총괄
-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
- 예산이용·전용·이체사용
- 계속비 집행
- 예비비 집행
-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
- 채무 부담행위
-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
- 기금 결산보고서
- 채권 현재액 보고서
- 채무 결산보고서
-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
-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,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과 고성군결산검사위원회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고성군의회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한 3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04년 5월 1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됨.
- 먼저 2003년도 세입결산으로 총 세입예산 현액은 3,508억 5,339만 2천 원이였으며, 실제수납액은 3,545억 7,497만 1천임.
-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3,464억 1,598만 8천원이 수납되어졌고, 미수납 결손처분액은 1,996만 3천원이며,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8,346만 4천원 이었음.
- 특별회계는 81억 5,898만 3천원이 수납되고 미수납액은 1억 4,243만 9천원이었음.
- 세출예산 현액은 총 3,508억 5,339만 2천원이며,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,428억 1,630만 6천원으로 1,710억 6,676만 8천원이 지출되고 1,585억 8,285만 8천원은 이월, 131억 6,66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음.
-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0억 3,708만 6천원중 53억 3,862만 8천원이 지급되고 8억 3,736만 7천원은 이월되고 나머지 18억 6,109만 1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음.
- 결산은 회계연도 수입지출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예산에 의하여 선행위하고 재정보고로 의회의 사후 감독, 즉 승인을 받는 것으로서 예산집행의 적정여부와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감시를 한다는 입장에서 예산의 집행과정을 정확히 확인·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시켜야 될 것으로 보다 세심한 심의가 요구되며,
-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 규정에 의거 고성군

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 3명의 위원이 2004.5.19부터 6.7까지 20일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·검토하는 것으로서 결산서상에 나타난 순세계잉여금 발생과정, 지방세 체납액 증가사유, 이월사업 및 불용액 과다발생 원인, 변상금·과태료의 징수부진 이유, 시책사업의 적정성, 효율성, 수지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검토 확인하고 중빙자료 대조 및 추진성과 등을 분석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및 업무추진에 가일층 분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3. 7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